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93호)

2026. 3.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3조의3 신설 등) ..	2
※ [참고] 해외사례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은회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2. 10.

다. 회 부 일 : 2026. 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복제·배포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비영리로 공표된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고,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미흡한데, 현행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만 명시하고 있을 뿐 발달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3조의3 신설 등)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공표된 저작물등을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② (생략) ③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④ (생략) <u><신설></u>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이 조,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에서-----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3(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이하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생략) ② 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발달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발달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을 발달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3조·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 -----.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를 보호하는 한편, 권리자의 이용허락¹⁾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개별적 저작권 제한사유(제23조부터 제36조까지)와 포괄적 제한 사유(제35조의5)를 두어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저작권법」의 저작권 제한 규정]

구 분	조 문
개별적 제한사유 (제23조~제36조)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포괄적 제한사유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개별적 제한사유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1)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법 제33조²⁾ 및 제33조의2³⁾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통한 복리증진을 위하여 저작물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33조는 시각장애인등⁴⁾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등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⁵⁾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표된

2)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저작권법」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33조의2는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변환된 한국수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며,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⁶⁾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을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

5)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6)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 (복제 등이 허용된 청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한국수어통역센터
 -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청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여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시각장애인등 및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저작권제한 규정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발달장애인⁷⁾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복제하는 것 등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일반적으로 장애인 관련 법령상 장애인⁸⁾이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

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8)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

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가 있는 사람을 이르는 바,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에 대하여도 대체자료 제작 및 복제 등을 허용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면제되는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는 발달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성 향상이라는 공익적 필요와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비교형량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제적 규범인 「마라케시 조약」⁹⁾에서도 시각장애인 등 인쇄물 접근이 어려운 사람의 저작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과정에서 쉬운 단어 사용, 문장 구조 수정, 삽화 추가 등 원저작물의 내용이나 구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실제 대체자료 제작 과정에서는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어

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정식 명칭은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2013년 6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채택한 조약으로 저작물 접근이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 저작물 이용 예외를 인정하여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국제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15년에 비준함.

입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임.

또한,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은 복제 대상과 적용 조건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권리 제한의 주체와 범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될 경우 국제조약상 이른바 ‘3단계 테스트’ 원칙¹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76

10) 저작권 제한·예외는 일반적으로 (1)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을 것, (2)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것, (3) 특별한 경우라는 원칙(3단계 테스트)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

국가명	내용
일본	저작권법(著作権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令和五年法律第三十三)) 제33조의3(교과용 확대도서등의 작성을 위한 복제등) ①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은, 시각장애, 발달장애(発達障害), 그 밖의 장애에 의하여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아동 또는 학생의 학습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해당 교과용 도서에 이용된 문자, 도형 등의 확대, 그 밖에 해당 아동 또는 학생이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식으로 복제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하는 교과용 도서, 그 밖의 복제물(점자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교과용 확대도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함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교과용 확대도서 등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 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상금액에 준하여 문화청장관이 매년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청장관은 전 항의 산출방법을 정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 이용,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한다. ④ 장애가 있는 아동 및 학생을 위한 교과용 특정 도서등의 보급 촉진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81호)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을 제공하는 자는 그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점자로 복제할 수 있다. ② 공표된 저작물은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점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록매체에 기록 또는 공중송신(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제외하며, 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할 수 있다. ③ 시각장애, 그 밖의 장애로 인하여 시각에 의한 표현의 인식이 곤란한 자(이하 이 항 및 제102조 제4항에서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로서 시각으로 그 표현이 인식되는 방식(시각 및 그 밖의 지각으로 인식되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되는 것(해당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로서, 해당 저작물에서 복제된 것, 그 밖에 해당 저작물과 일체로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동 조 제4항에서 “시각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오로지 시각장애인등으로서 해당 방식으로는 해당 시각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각저작물과 관련된 문자를 음성으로 하는 것, 그 밖에 해당 시각장애인등이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식으로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 혹은 제79조의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의 복제허락이나 공중송신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하여 해당 방식에 의한 공중의 제공 또는 제시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